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89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이인선 · 김상훈 · 김기현  
최은석 · 우재준 · 김성원  
박충권 · 김장겸 · 서일준  
고동진 · 성일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할당관세로 인한 물품의 수급과 가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에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법률 제 호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중 “(관세 부과 효과 등을)”을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관세 부과 효과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1조(할당관세) ① ~ ③ (생략)</p> <p>④ 재정경제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1조(할당관세)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관세 부과 대상 물품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관세 부과의 효과를</u>----- ----- -----.</p>